

안전한 학교, 건강한 교실

# 학교 안전교육의 개요

# I



1. 학교 안전교육의 추진 배경
2. 학교 안전사고 대처 및 발생 현황



# 1

## 학교 안전교육의 추진 배경

### 가. 학교 안전교육의 필요성

행복한 생활은 안전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다.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교육활동이 아무리 큰 성과를 내더라도 그 성과는 퇴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하도록 돕는 것은 학교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전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학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원인 분석을 통한 안전교육과 안전생활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본 길라잡이는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회 사고사례를 참고하였으며, 학생의 생활공간에 따라 **학교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체험안전**, **재난안전**, **응급처치** 등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 나. 학교 안전교육의 목표

◇ 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선이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미국의 허버트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 및 징후가 반드시 있는데, 어떤 재해로 중상자가 1명이 나오게 되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경상자가 29명 있었고,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을 겪게 된 사람이 300명 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이를 하인리히 법칙 또는 **1:29:300법칙**이라고도 한다.

또한, 사고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하인리히는 5단계로 설명하였는데,



다섯 가지 요인 중 어느 하나가 잘못된다면 도미노와 같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면서 사고가 발생하며, 5단계 중 어느 한 요인을 제거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사고처리는 신속하고 정확해야 한다.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하는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이고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 다. 안전교육 관련 주요 법령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	주요 내용
제8조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제1항 :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실시
제8조의2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제1항 :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
시행규칙 제2조 (학교 안전교육의 실시)	제1항 :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시간, 재량활동시간 및 특별활동시간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 교육횟수·시간 및 강사 등은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따라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그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등 실시

◇ 학교보건법

법령	주요 내용
제 9조 (학생의 보건 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
제9조의2 (보건교육 등)	제1항 :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제2항 :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

◇ 아동복지법

법령	주요 내용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1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 포함
제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1항 :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안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제2항 :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 원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 제3항 :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은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월 말까지 1회 보고(관련: 아동복지법시행령 28조 2항)
시행령 10조 (응급처치교육 등)	제1항 :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및 시간 등은 별표 9의 교육 기준에 따라야 함 3년 주기 교육 대상 : 교직원 매년 교육 대상 : 보건교사(보건업무 담당 포함), 체육교사(체육 수업 담당 포함), 학교운동부지도자, 스포츠강사 교육내용 : 이론교육(2시간), 실습교육(2시간)
시행령 제28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1항 : 교육기관의 장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3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함. - 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 : 6개월 1회 이상(연간 8시간 이상) -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교육 : 3개월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육 : 3개월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 재난대비안전 : 6개월 1회 이상(연간 6시간 이상) - 교통안전교육 : 2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항	- 단위학교별 연간 1시간 이상 교직원 대상 연수 실시 - 학교별 외부강사 초청 교육,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연수 시 반영, 신규교사, 공무원 임용교육, 승진자 연수 시 1시간 이상 반영 -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2014. 9.29.)

## 2 학교 안전사고 대처 및 발생 현황

### 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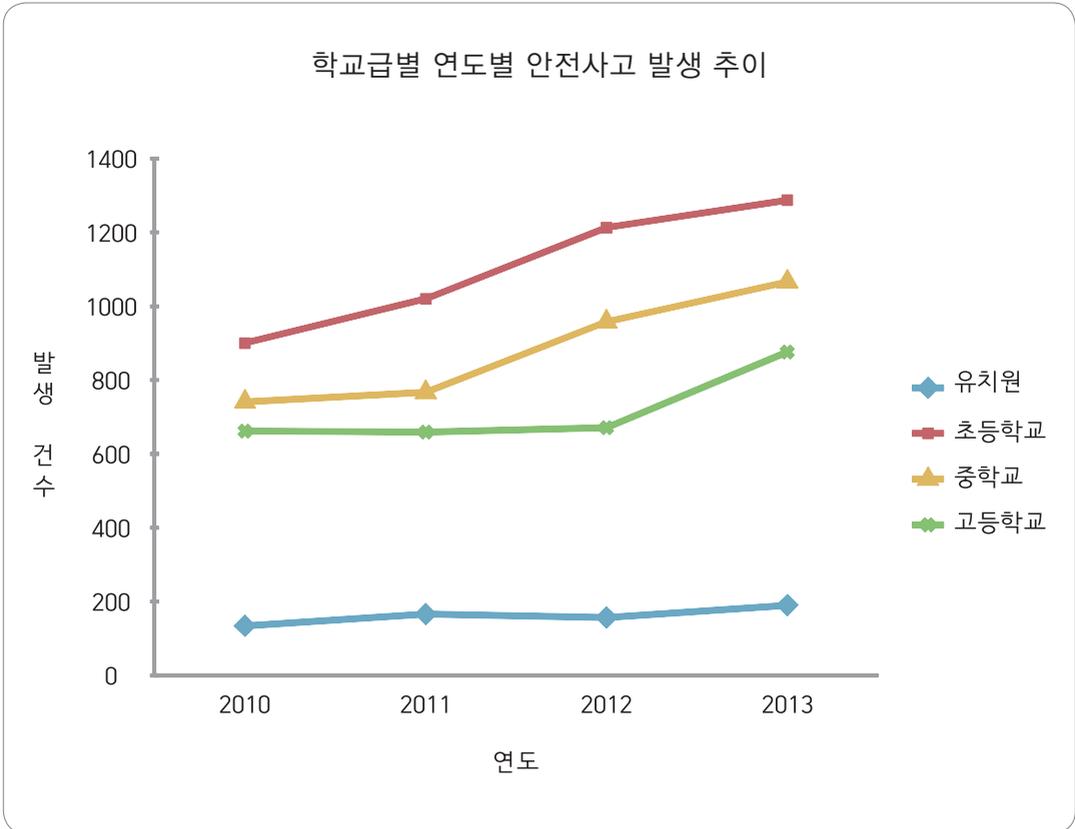
◇ 발견자 및 부서별 역할

구 분	역 할
학 생	▪ 119에 신고 및 담임교사에 연락
교 직 원	▪ 119에 신고 및 학교장에 연락
교 장	▪ 교육지원청 및 학부모에 연락
교 육 지 원 청	▪ 본청 해당부서 및 학생안전관리지원단에 보고
본 청 해 당 부 서	▪ 재난상황 대응
학 생 안 전 관 리 지 원 단	① 사안에 따라 상황반 마련 지시(해당부서 또는 교육지원청) 및 보고 ② 유관기관 협조 및 재난현황 실시간 관리

## 나. 전라북도 학생 안전사고 발생 현황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2013년 자료)

◇ 연도별 안전사고 발생 추이(보상금 지급시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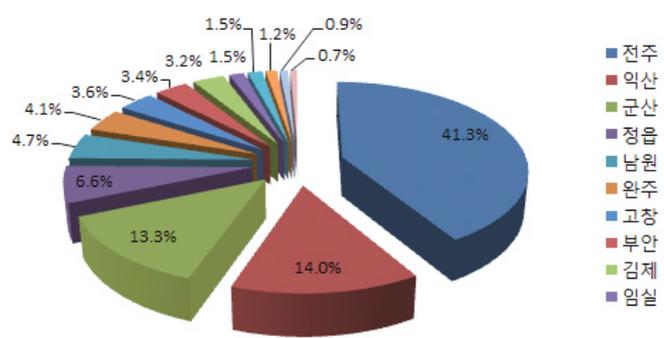
구분	2010	2011	2012	2013	증가율
유치원	134	166	157	190	41.8
초등학교	900	1,020	1,213	1,287	43
중학교	741	767	958	1,066	43.8
고등학교	662	659	671	876	32
계	2,519	2,634	3,224	3,447	36.8

\* 증가율: 2010년 대비 2013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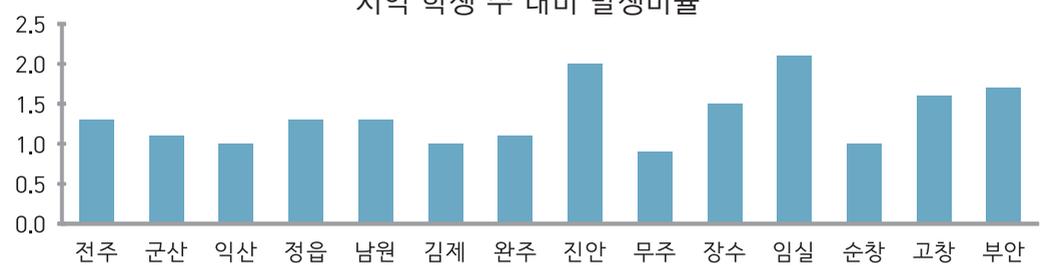
◇ 발생 현황 통계(발생시점 기준, 2013)

● 지역별 발생 현황

전체 발생 건수 대비 발생 비율



지역 학생 수 대비 발생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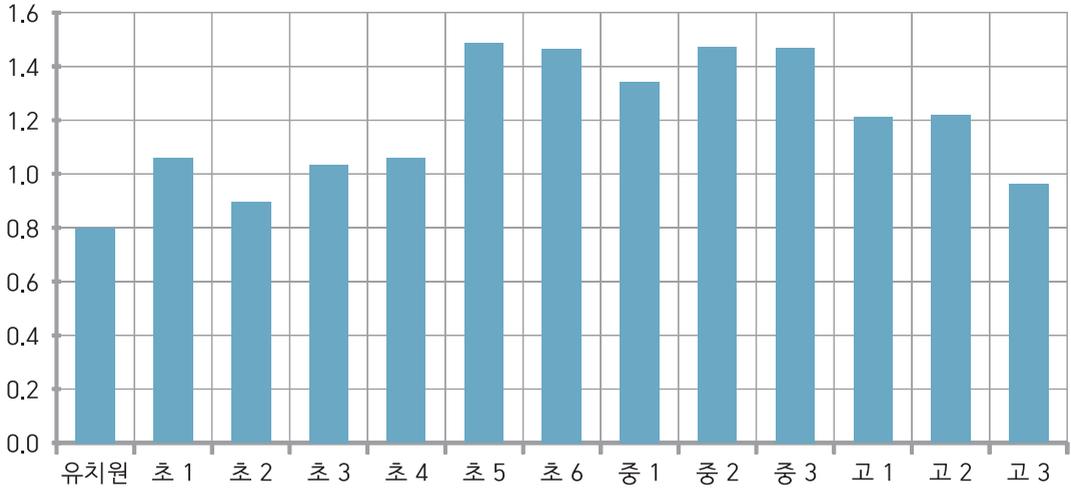


구분	학생 수	발생건수	발생비율	비고
전주	108,771	1,360	1.3	
군산	39,714	438	1.1	
익산	46,522	461	1.0	
정읍	17,261	217	1.3	
남원	11,661	153	1.3	
김제	11,056	106	1.0	
완주	12,876	136	1.1	
진안	2,501	49	2.0	
무주	2,683	23	0.9	
장수	2,495	38	1.5	
임실	2,389	50	2.1	
순창	2,986	29	1.0	
고창	7,444	119	1.6	
부안	6,356	111	1.7	
계	274,715	3,290	1.2	

\* 학생 수 대비 발생률 높은 지역 순서 : 임실>진안>부안>고창>장수

○ 학교급별, 학년별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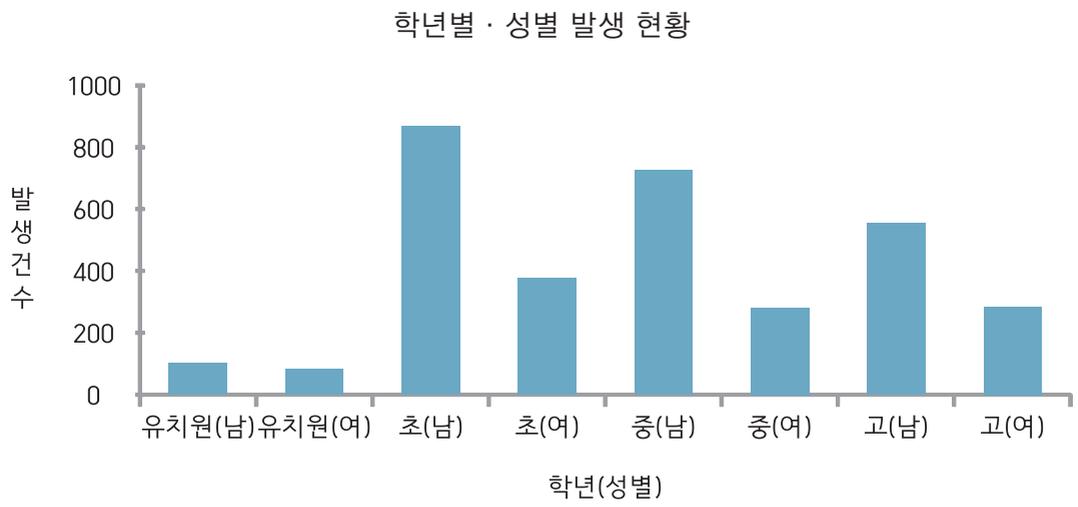
학교급별, 학년별 발생비율



구분	학생 수	발생건수	발생비율(%)	비고(순위)	
유치원	23,234	186	0.801	13	
초등학교	1	15,659	166	1.060	9
	2	15,775	141	0.894	12
	3	16,998	176	1.035	10
	4	17,822	189	1.060	8
	5	18,113	269	1.485	1
	6	20,743	304	1.466	4
	계	105,110	1,245	1.184	
중학교	1	23,481	315	1.342	5
	2	22,980	338	1.471	2
	3	24,147	355	1.470	3
	계	70,608	1,008	1.428	
고등학교	1	24,952	302	1.210	7
	2	24,858	303	1.219	6
	3	24,652	237	0.961	11
	계	74,462	842	1.131	
특수학교	1,301	9	0.692	14	
계	274,715	3,290	1.198		

\* 발생비율이 높은 학년 순서 : 초5>중2>중3>초6

● 학년별·성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유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육활동 참여자	합계	
유치원	186	-	-	-	-	-	-	-	186	
남	103	-	-	-	-	-	-	-	103	
여	83	-	-	-	-	-	-	-	83	
초등학교	-	166	141	176	189	269	304	-	1,245	
남	-	103	98	120	127	204	216	-	868	
여	-	63	43	56	62	65	88	-	377	
중학교	-	315	338	355	-	-	-	-	1,008	
남	-	219	244	263	-	-	-	-	726	
여	-	96	94	92	-	-	-	-	282	
고등학교	-	300	303	237	-	-	-	1	841	
남	-	194	198	163	-	-	-	1	556	
여	-	106	105	74	-	-	-	-	285	
특수학교	-	2	3	3	1	-	-	-	9	
남	-	2	3	2	-	-	-	-	7	
여	-	-	-	1	1	-	-	-	2	
합계	186	783	785	771	190	269	304	1	3,289	
비율 (%)	초	-	13.3	11.3	14.1	15.2	21.6	24.4	-	100
	중	-	31.3	33.5	35.2	-	-	-	-	100
	고	-	35.7	36.0	28.2	-	-	-	0.1	100
	특수	-	22.2	33.3	33.3	11.1	-	-	-	100
합계	5.7	23.8	23.9	23.4	5.8	8.2	9.2	0.0	100	

\* 발생건수가 많은 학년 순서 : 초등학교 : 6)5)4, 중학교 : 3)2)1, 고등학교 : 2)1)3

● 학교급별·시간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체육 시간	휴식 청소	점심 시간	특별 활동	수업 시간	운동부 활동	등·하교	학교 행사	현장 학습	자율 학습	기타	합계
<b>남</b>	502	481	468	220	153	118	116	115	51	33	3	2,260
유	9	12	15	13	28		8	2	7	9		103
초	152	203	220	93	53	24	66	22	19	16		870
중	191	156	146	63	43	44	27	42	12	1	1	726
고	149	110	86	51	26	50	14	48	13	7	2	556
특	1		1		3		1	1				7
<b>여</b>	224	193	165	82	80	33	73	96	53	27	3	1,029
유	8	12	6	12	29		4		7	5		83
초	80	77	84	42	24	3	36	10	14	7		377
중	71	60	46	17	16	14	12	32	12	2		282
고	64	44	28	11	11	16	21	54	20	13	3	285
특	1		1									2
<b>합계</b>	726	674	633	302	233	151	189	211	104	60	6	3,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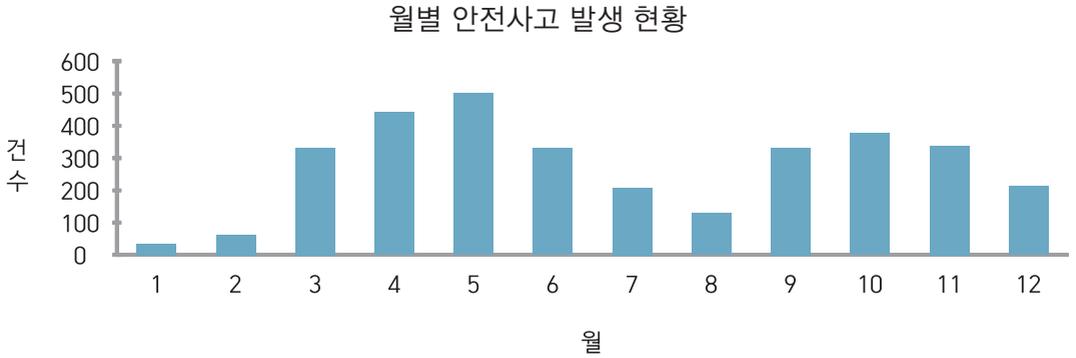
\* 발생이 많은 시간 순서 : 체육시간>휴식·청소>점심시간>특별활동>수업시간

● 발생 장소별 현황

발생장소	건수	비율(%)
운동장(체육관)	1,649	50.1
일반교실	479	14.6
계단	305	9.3
복도	225	6.8
체험학습장	114	3.5
놀이시설	81	2.5
출입문, 현관	73	2.2
식생활관	49	1.5
특별교실	36	1.1
화장실	36	1.1
등하갯길	30	0.9
실험·실습실	24	0.7
기숙사	24	0.7
기타	164	5.0
<b>계</b>	<b>3,289</b>	<b>100</b>

\* 발생이 많은 장소 순서 : 운동장(체육관)>일반교실>계단>복도

● 월별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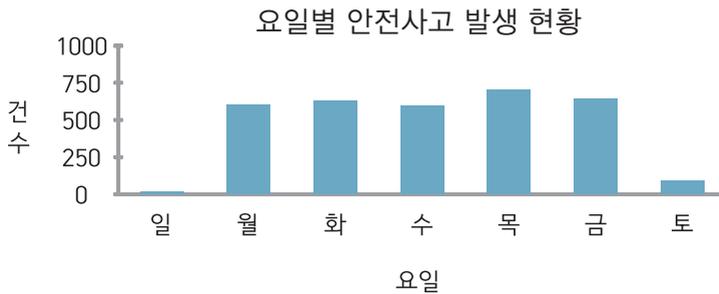


(단위 : 건)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건수	35	62	332	441	500	330	208	130	322	377	338	214	3,289
비율(%)	1.1	1.9	10.1	13.4	15.2	10.0	6.3	4.0	9.8	11.5	10.3	6.5	100

\* 발생건수가 많은 달 순서 : 5월>4월>10월>11월>3월

● 요일별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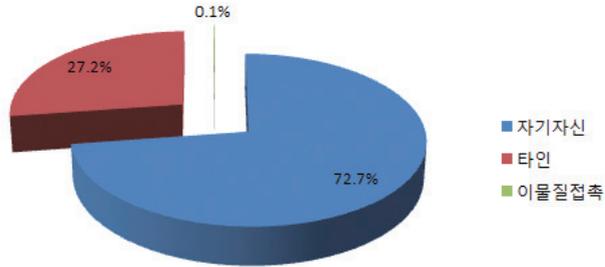


(단위 : 건)

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합계
유		45	40	32	41	28		186
초	1	239	244	245	244	244	28	1,245
중	4	197	187	160	221	212	27	1,008
고	13	123	158	154	198	160	35	841
특			2	5		2		9
합계	18	604	631	596	705	646	90	3,289

\* 발생이 많은 요일 순서 : 목요일>금요일>화요일>월요일>수요일

○상해 유인별 발생 현황



구분	발생건수	자기 자신	타인	이물질 접촉	기타
유치원	186	138	48	0	0
초등학교	1,245	1,140	102	3	0
중학교	1,008	672	336	0	0
고등학교	842	0	204	0	1
특수학교	9	8	1	0	0
계	3,290	2595	691	3	1
비율(%)	100	78.9	21.0	0.1	0

○상해 부위별 현황

상해부위	건수	비율(%)
발	754	22.9
손	541	16.4
머리	522	15.9
다리	475	14.4
팔	333	10.1
치아	297	9.0
흉·복부	177	5.4
눈	164	5.0
기타	26	0.8
계	3,289	100

\* 상해가 많은 부위 순서 : 발>손>머리>다리>팔